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2,790,488	9,683,715
일반회계	276,972,814	8,309,184
특별회계	45,817,674	1,374,530
기타특별회계	45,817,674	1,374,5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9,287	43,779
수질개선특별회계	18,447,662	553,4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4,377	16,931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520,307	105,609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91,294	8,73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469,463	434,084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106,120	63,1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1,468	21,64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237,696	127,131

제 2 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13,05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                   |                 |
|-------------------|-----------------|
|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
|-------------------|-----------------|